

1. 의결주문

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에도 현행 조문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, 민법의 위임조항 및 타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- 가.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격 명확화(안 제5조)
- 현재 의무사항처럼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함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2) 입법예고(2020.11.03.~2020.12.1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만”으로, “허가하여야 한다”를 “허가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.01.01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설립허가) ①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<u>경우에는</u> 그 설립을 <u>허가하여야 한다</u> .	제5조(설립허가) ① ----- ----- ----- <u>경우에만</u> ----- <u>허가한다</u> 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연락처	02-2100-2804